

2024 에센스 사회보험법 정오표

55면 1. 2), ④ 괄호안 추가		④ 예술인(소득 기준 충족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단기예술인은 제외) 및 노무제공자(소득 기준 충족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57면 3) ② 다음에 ③ 추가		③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증가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60면 6. 2), ①	(오)	① 적용기간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정)	①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129면 3. 2), ②의 본문 추가		② 지원요건(고보령 제19조)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과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18]
144면 2. 2), ②의 후문 삭제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6]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157면 2. 2) 및 3) 내용 추가		2) 지급요건(고보법 제64조 및 고보령 제84조) ①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4(사례)]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수당의 금액 및 수당의 청구(고보령 제85조 및 제86조) ①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12(사례), 14(사례)] ② 수당의 청구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
168면 문제 25. 지문	(오)	25. 보험자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
	(정)	25. 피보험자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
174면 문제 2. 지문	(오)	2.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신법]
	(정)	2.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신법]
174면 문제 3. 지문	(오)	3. ~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어야 한다. [신법]
	(정)	3. ~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어야 한다. [신법]

192면 2. 1) ④ 수정	④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올려 6개월차에 4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205면 문제 8. 지문 ③ 수정 해설 ③ 수정	(오)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령제95조 제2항).
	(정)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228면 문제 9. 정답·해설수정	(오) 9. (②,⑤,⑦)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정) 9. (②,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조 참조.
268면 2. 1), ④, ⑥ 수정	④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⑤ 형제자매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68면 2. 3), ④⑤⑥ 수정	④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⑤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21] 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271면 1. 3) ② 본문 수정	② 취업가능기간 취업가능기간은 장애등급 또는 진폐장애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산재법 제73조 제3항, 대법원 판례에서는 65세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87면 문제 8. 해설 수정	8. (X) <u>자녀와 손자녀는 25세, 형제자매는 「19세」가 된 때에 그 자격을 잃는다</u> (산재법 제64조 제1항 제4의2). [21]
288면 [10] 문제4. 해설수정	4. (X)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산재법 제73조 제3항).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 2019. 2. 21, 2018다248909)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직상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02면 문제 24. 지문 ④	④ 25세 손자녀
302면 문제 24. 해설도표 3,5 수정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303면 문제 25. 해설도표 4,5,6 수정	4.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5.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432면 문제 15. 지문 수정	15.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다.
451면 [4] 문제 3. 정답 및 해설 수정	(오) 3. (○) 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정) 3. (X)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건보법 제83조 제1항).